

1. 개정이유

의료법 개정(법률 제205939호, 2024. 12. 20. 공포, 2025. 6. 21. 시행)에 따라
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전송 요청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
정하고,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(영 제10조의7)

- 1)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 요청에 따른 그 밖의 전송 방법을 정보통신망,
전자우편, 팩스 등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

나.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(영 제32조제1항)

- 1)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·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에
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

대통령령 제 호

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2까지를 각각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3까지로 하고, 제1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7(진료기록의 전송등 방법)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정보통신망, 전자우편, 팩스 등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을 말한다.

제3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·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7(진료기록의 전송등 방법)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정보통신망, 전자우편, 팩스 등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을 말한다.</u>
<u>제10조의7 ~ 제10조의12 (생 략)</u>	<u>제10조의8 ~ 제10조의13 (현행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2까지와 같음)</u>
제32조(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)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7. (생 략)	제32조(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8.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·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</u>